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년 7월 23일
- 나. 제안자 : 강근옥 의원 외 8인
- 다. 회부일자 : 1994년 7월 23일
- 라. 상정일자 : 1994년 7월 23일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4. 7.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행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안 제6조)
- 국내·외 출장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대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표의 별표 1, 2의 개정(안 제7조)
-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저 교통비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의원의 경우 현저 교통비를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일부 개정되는 것임.

3. 집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견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7
의 결	94. 8. 1
년 월 일	(제30회)

제출년월일 : 1994년 7월 23일

제 출 자 : 장근옥의원의 8인

1. 제안이유

'94.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함. (안제6조)

나.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대로 현실화함. (안제7조) (별표 1, 2)

3. 참고사항 : 별 칙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항[별표2]중 숙박비와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비고란 제1호 가목중 ‘홍콩’ 다음에 ‘모스크바’를, 동란 동호 나목(3)중 ‘노르웨이’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를 동란 동호 동목(4)중 수단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각각 신설하며, 동란 동호 다목(1)중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하고, ‘뉴질랜드’ 다음에 ‘중국, 베트남’을 신설하며, 동란 동호 동목(3)중 ‘회랍’ 다음에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를 동란 동호 동목 제(4)중 ‘모리시어스’ 다음에 ‘잠비아, 알제리’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 동호 라목(1)중 ‘미어마’를 ‘미얀마’로 하며 ‘네팔’ 다음에 ‘몽골’을 신설하고, 동란 동호 동목(4)중 ‘북에멘’을 ‘에멘’으로 하며, ‘소말리아’ 다음에 ‘나미비아, 탄자니아’를 신설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관련)

(미분화)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 장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90	나등급 78
부의장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의 원	가등급 114	가등급 81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7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 분 \ 지급기준액	철 도 운 입	선박운임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 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세마을호 특실, 2등급은 세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 일에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의 장	1등급	2등급액	정액
부·의 장	1등급	2등급액	정액
의 원	2등급	2등급액	정액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6,500
			6,500

숙박비(1일당)	식 비(1일당)	식탁료(1야당)
20,700		(삭 제)
16,200		(삭 제)

(비고)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생 략)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1일당)
의 장	(생략)	(생략)	1등	실비액	가등급25, 나등급25
부의장			정액		다등급25, 라등급25
의 원			2등	실비액	가등급20, 나등급20 다등급20, 라등급20

(비고)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행		정			
		개		종	
숙박비(1야당)	식 비(1일당)	준 비		종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가동급 100	가동급 53				
나동급 79	나동급 46				
다동급 60	다동급 40				
라동급 40	라동급 33				
가동급 83	가동급 48				
나동급 66	나동급 42				
다동급 50	다동급 36				
라동급 33	라동급 3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모스크바
가. 가동급: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가. 나. 모스크바
나. 나동급:	나. 나. 모스크바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유럽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3)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 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루트디브와르, 니제르, 자 이르, 수단	(4)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동급:	다.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1) 아세아주: 대양주: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 대만
(2) (생략)	(2) 중국, 베트남
	(2) (현행과 같음)

(3) 유럽주: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최랍

(4) 중동, 아프리카주: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라. 라동글:

(1) 아세아주, 대양주: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취지네팔

(2) (생 략)

(3) (생 략)

(4) 중동, 아프리카주: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생 략)

(3)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4)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잠비아, 알제리

라.

(1) 미얀마

..... 몽골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예멘

..... 나미비아, 탄자니아

2. (현행과 같음)